

제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나148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나14851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가소1188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0. 5. 13.

판결 선고 2020. 6. 3.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가소1188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업무차량의 주유를 위하여 제주시 C 소재 D주유소와 외상주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위 주유소에서 업무차량의 주유를 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인 E로 하여금 위 주유소에서 E 소유의 F SM3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외상거래장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8. 6.부터 2019. 6.까지 36회에 걸쳐 1,490,000원 상당의 외상주유거래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유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주유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고의 배우자인 E이고, 달리 피고에게 그 주유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문종철

판사류호중

판사조병대